

‘뮤비방’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유 현 우*

최근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신종 영업이다. 뮤비방은 음악산업법의 해석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많은 뮤비방 영업자들은 음악산업법의 허점과 규제의 공백을 악용하여 뮤비방을 형식적으로는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편법·변칙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뮤비방의 유사 노래연습장 영업 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마땅한 규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적 흠결과 여러 행정절차 상의 난제, 해석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뮤비방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i)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는 방안, ii)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하고 영상물제작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iii)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 iv)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뮤비방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뮤비방을 음악산업법 내에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동시에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노래방,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업, 뮤비방, 식품위생법,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前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법률전문가) (hi_cokely@naver.com)

목 차

- I. 서론
- II. 뮤비방의 실태 및 법적지위
 - 1. 뮤비방의 정의
 - 2. 뮤비방의 실태
 - 3. 법적 성격
 - 4. 관련 규정
- III. 뮤비방의 문제점과 규제의 난점
 - 1. 뮤비방의 문제점
 - 2. 뮤비방 규제의 난점
- IV. 해석론의 한계
 - 1. 소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 2. 관련 판례 검토
 - 3. 한계
- V. 뮤비방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1.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는 방안
 - 2.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하고 영상물제작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 3.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
 - 4. 현행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 VI. 결론

I. 서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방음이 된 방에서 가사가 화면에 나타나는 음악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장치를 해 놓은 곳”으로 정의되고 있는 ‘노래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용어이다. 그러나 ‘노래방’이라는 용어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일상생활 용어에 불과하다. 일반 국민이 흔히들 ‘노래방’이라고 부르며 인식하고 있는 시설 내지 영업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 내지 영업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과 「식품위생법」에서는 각각 ‘노래연습장업’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정의 및 규정하고 있다.

문제 되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생활 용어에 불과한 ‘노래방’이 법적으로는 각 법률에서 허용되는 영업 형태에 따라 서로 각기 다른 영업으로 정의 및 규율되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이들 영업이 법률상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노래연습장업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그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 및 영업을 의미하는 ‘노래방’으로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

최근에는 더 나아가 기존 노래연습장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노래 반주장치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녹음·녹화 기능을 부가적으로 더한 장치 및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이른바 ‘뮤비방’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뮤비방은 음악산업법상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영업자의 대부분은 까다로운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여러 규제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영업을 가능한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제가 거의 없고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가능한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영위

1)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이라는 명칭은 1990년대까지 “음식과 주류를 팔지 않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영업의 종류”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동일하게 사용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노래연습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 하는 음악산업법상 음악산업의 한 형태로 규정되면서 음악산업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이외에는 모두 「식품위생법」상의 ‘주점’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문지현, “한국노래방의 성장을 둘러싼 사회문화사: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1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6년, 149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되는 것은 대부분의 뮤비방이 음악영상물을 제작한다는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는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노래 연습장업으로 편법·변칙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비방의 이른바 ‘유사 노래연습장 영업’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마땅한 규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뮤비방 영업자들은 뮤비방에 대한 별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및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현행 음악산업법의 허점과 흠결을 오히려 악용하여 심지어 학교 바로 앞에서까지 버젓이 불법·변칙 영업을 영위하면서 학생 및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으로 편법·변칙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뮤비방은 노래연습장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탓에 오히려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 및 영업 제한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이른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뮤비방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뮤비방의 실태와 뮤비방의 정의 및 법적 성격, 관련 규정 등 뮤비방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찰하고(II장), 이어서 뮤비방의 문제점과 규제의 난점 등에 대해서 진단한다(III장). 다음으로 뮤비방 관련 법률 소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해 해석론의 한계점을 도출한 후(IV장), 뮤비방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V장).

II. 뮤비방의 실태 및 법적지위

1. 뮤비방의 정의

‘뮤비방’은 ‘뮤직비디오방’ 내지 ‘뮤직비디오 제작방’의 줄임말로써 고객들이 노래 반주 장치를 이용하여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녹화·영상 제작 장치를 통해 직접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하고 만든 영상을 편집·믹싱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²⁾ 노래 반주 기기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녹음·녹화 기능을

부가적으로 더한 장치 및 시설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이를 뮤직비디오 형태의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³⁾하는 신종 영업인 뮤비방은 이외에도 ‘노래 뮤비방’, ‘(노래) 영상 제작실’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2. 뮤비방의 실태

이러한 뮤비방은 도입 초창기만 하더라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점차 유흥화 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많은 영업자들이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뮤비방을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으로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의 불법·탈법적인 영업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한편 2010년대 초부터 음악산업법상의 많은 규제가 존재하는 노래연습장업을 고의적으로 자진 폐업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중인 상태에서 당국의 규제 및 제재를 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자가 기존 노래연습장업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눈속임으로 업종만 영상물제작업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실태⁵⁾가 이미 공식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했다.⁶⁾

-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020440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 11., 3면.
- 3) 뮤비방에서는 대형 블루스크린을 통해 영상의 배경화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USB 메모리 등에 제작된 영상을 쉽게 저장하여 이를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김수진, ““뮤직비디오 만드세요” 노래뮤비방, 영상제작실로 역할 ‘톡톡’”, 글로벌이코노믹, 2015년 11월 10일자,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11101547540169945_1/article.html?md=20151110161020_R>,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 4) 백정훈, “광주광역시, 변종 노래방 ‘뮤비방’ 성행”, 포커스 투데이, 2019년 3월 22일자,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04>>,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 5) 이러한 실태는 산업 통계조사에서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2018년도 노래연습장 운영업의 종사자는 6만 3,786명으로 전년 대비 1.8%, 2016년부터 연평균 2.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상물제작업이 속한 음악 제작업의 종사자 수는 4,274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 연평균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래연습장 운영업의 매출액은 1조 4,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 연평균 2.4% 감소한 반면 음악 제작업의 매출액은 1조 4,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 연평균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19년, 176면; 문화체육관광부, 2019 콘텐츠 산업 백서, 2019년, 75면.

이에 음악산업법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2년 3월 i) 민원인이 영상물제작업 신고를 위해 행정청에 제출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에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실질적인 행태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영상물제작업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무등록노래연습장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것, ii) 영상물제작업의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해당 영업소가 무등록노래연습장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수리 사실을 해당 노래연습장업 소관 기초 지자체에 통보할 것,⁷⁾ iii) 기존 영상물제작업 신고자 중 시설 및 장비 명세서에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목록을 해당 노래연습장업 소관 기초 지자체에 통보할 것, iv) 노래연습장업 담당자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를 활용한 녹음방 운영 등의 실태 및 영상물제작업 담당자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노래연습장업 변칙영업(녹음방 또는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채 실질은 노래연습장으로 운영)의 현황을 파악할 것, v) 노래연습장업 미등록 또는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 기간 중 변칙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무등록노래연습장에 따른 폐쇄 조치(등록 취소)를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것(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공조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래연습장업 변칙영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⁸⁾’을 전국의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에 최초로 하달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일찍부터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음악산업법의 개정을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문체부는 관련 법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언

6) 일부 지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무등록노래연습장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11건 중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 후 사실상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변칙영업을 한 경우가 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020440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 11., 5면.

7) 개정 전 음악산업법에서는 영상물제작업의 경우에는 광역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제16조제1항)하고 있는 반면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18조제1항). 이와 같이 담당 사무의 주체가 각기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비방의 변칙영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광역 지자체의 영상물제작업 담당자에게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즉시 기초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업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 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 음악산업법 등 46개 법률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업무도 노래연습장업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자체장이 담당하게 되었다.

8) 문화체육관광부, 노래연습장업 변칙영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영상콘텐츠산업과-841, 2012. 3. 8., 1면.

론 등에서 뮤비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뮤비방이 공론화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급급하게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경우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영업단계에서 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영업을 했다면 이는 무등록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니 행정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라”라는 내용의 일선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지침만을 수차례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업무의 부담과 이에 따른 책임을 사실상 지자체에 떠넘겨버렸다.⁹⁾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업무의 혼선을 겪으면서 생계가 걸린 영업주들과의 직접적인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물론 물리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등 업무 수행 중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¹⁰⁾ 이후에도 문체부는 법제 개선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대신 뮤비방이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문제가 될 때마다 사실상 위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 처리 지침¹¹⁾과 공문을 지자체에 하달하고 보도자료¹²⁾를 작성·배포하여 홍보하기만을 반복해 왔다.

또한 문체부는 2017년 2월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뮤비방 업종에 종사해야 하는데 아직 뮤비방이 널리 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뮤비방의 영상물제작업 신고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이다”¹³⁾라고 언급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뮤비방’이 무등록노래연습장으로 운영되는 불법 영업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음악산업법을 조속히 개정해 (뮤비방) 신고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자체에 공식 전달하면서 뮤비방의 개념을

9) 윤철아, “인천시·문광부, 변종노래방 단속 떠넘기기 급급”, 경인일보, 2017년 3월 6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303010000944>>,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10) 황신섭, “‘뮤비방’이라 쓰고 ‘노래방’으로 읽기?”, 인천일보, 2017년 3월 26일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28>>,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11) 문화체육관광부, 노래연습장업 변칙영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대중문화산업과-752, 2013. 7. 8., 1-2면.

12)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문체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 영업 단속 강화-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 시행-”, 대중문화산업과, 2014. 4. 8.

13) 김주엽, “[법의 사각지대 ‘뮤직비디오방’·하·끝] 단속·규제 엇갈리는 행정당국”, 경인일보, 2017년 2월 28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227010009712>>,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뮤비방을 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 형태로 운영될 경우 노래연습장업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음악산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식 입장¹⁴⁾을 밝히면서 기존의 입장을 곧바로 번복한 바 있으나 어찌 된 일인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음악산업법의 개정은 아직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뮤비방은 이미 201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성행하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관계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 정책 및 규제 공백으로 인해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뮤비방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차체들은 행정부담, 행정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뮤비방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¹⁵⁾

3. 법적 성격

‘뮤비방’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악산업법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노래하는 모습을 녹화·영상 제작 장치를 통해 직접 뮤직비디오 및 라이브 영상 형태의 영상물로 제작하고 이러한 영상물을 편집·믹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상물제작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음악산업법에서는 각 영업자의 주요 시설·기구에 대해서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노래 반주 장치로, 영상물제작업의 경우에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기기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시행령 제10조), 뮤비방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노래 반주 장치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녹화·영상 제작 장치를 통해 직접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한 영상을 편집·믹싱할 수 있는 제작 기구를 이용하여 음반·음악영상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영상물제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14) 김주엽, “문광부 ‘뮤비방’ 단속규정 개정 착수”, 경인일보, 2017년 3월 27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326010009428>>,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15) 신익규, “사각지대 놓인 ‘변질 뮤비방’”, 금강일보, 2019년 10월 10일자,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968>>,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현행 음악산업법에서는 음악영상물의 제작 기능이 있는 장비 및 시설과 노래 반주 장치를 동시에 갖춘 이른바 뮤비방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뮤비방은 현행 음악산업법에 따른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에 모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뮤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어떠한 영업을 영위할 것인지 그 의도에 따라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¹⁶⁾

4. 관련 규정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은 그 영업 방식과 목적이 다르므로 음악산업법에서는 정의 규정은 물론 사무 종류에서부터 시설기준, 준수사항,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악산업법상의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을 구별하는 실익은 각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중질서와 안전에 대한 위험이 각기 다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1) 정의

음악산업법에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영상물제작업”)에 대해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을 기획제작 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8호). 여기에서 ‘기획제작’과 ‘복제제작’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음악산업법에서는 ‘기획제작’ 및 ‘복제제작’의 의미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획제작’이란 “공중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곡·가수·연주자 등을 선택하여 편곡, 노래녹음 및 믹싱 등 과정을 통해 음반 등을 제작하는 영업”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복제제작’이란 “공중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020440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 11., 4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대량 복제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¹⁷⁾

다만, 녹음 장비, 인력 등을 대여 및 설치하여 단순히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음을 녹음하거나 고객이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음악산업법상의 영상물제작업이 아닌 자유업의 일종인 녹음업¹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용자 또는 영업주의 개인적인 소장을 목적으로 음반·음악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영상물제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 1회라고 하더라도 공중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¹⁹⁾

2) 사무 종류 - ‘신고²⁰⁾’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i)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작하는 경우, ii)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iii)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iv)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v)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공중에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vi)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는 경우(시행령 제7조) 등을 제외²¹⁾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1항). 한편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는

17)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 진흥업무 매뉴얼, 2017년, 82면.

18)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서는 ‘녹음업’에 대해 오디오 기록물을 기획·제작 및 출판하거나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을 녹음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녹음시설 운영업(59202)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9)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자료(주 17), 82면.

20) 영상물제작업은 공중에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종이 아니고 따라서 공중에 대한 피해 내지 해악의 발생 우려도 적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도 해당 영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법, 프레젠티, 2015년, 883면.

2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가운데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관련 영업자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음악산업법에서는 신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박순태, 위의 책, 884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16조제5항).²²⁾

3) 의무사항

음악영상물 및 영상파일을 제작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및 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법 제17조제1항),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 또는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의미함) 등을 표시해야 한다(법 제25조제1항).

음반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함) 등이며(시행령 제11조제1항), 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 제25조제1항의 표시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36조).

(2) 노래연습장업

1) 정의

음악산업법에서는 ‘노래연습장업’에 대해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3호).

이러한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에만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업소

22) 동 규정은 종전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비디오물로 분류되었던 뮤직비디오가 2006년 음악산업법으로 독자적으로 분법 되고 현재는 동법에 따라 음악영상물로 분류됨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 박순태, 위의 책, 884면.

(법 제2조제5호 및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6호).

2) 사무 종류 - '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한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1항).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안전·위생의 확보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관리 및 규제가 수반²³⁾ 되어야 하므로 음악산업법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후에 영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여러 준수 및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²⁴⁾

3) 시설기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i) 상호·간판, ii) 영업소의 구획, iii) 통로 및 칸막이, iv) 안전시설, v)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vi) 조명기구, vii) 마이크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법 제18조제1항).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노래연습장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선택적으로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법 제27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28조제1항제1호).

23) 노래연습장업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에도 해당되는데 동법에서 노래연습장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 시킨 것은 노래를 부르며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의 공간과 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위험성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공간과 시설의 밀실성·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문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년, 28면.

24) 박순태, 앞의 책(주 20), 890면.

4) 건축물의 종류 및 영업지역

노래연습장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²⁵⁾되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며 준주거지역 및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안에서도 건축 및 영업을 가능하다.²⁶⁾

5) 준수 및 금지사항

노래연습장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음악산업법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다.²⁷⁾

노래연습장업자는 i)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ii) 해당 영업장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시행령 제8조제1항)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행령 제8조제2항), iii)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iv) 접대부(남녀를 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v)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vi)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할 것(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9조[별표 1])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하고(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2조제2항).

2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27) 박민·황승흠·김정환(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음악산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8면.

6) 기타 규제

가. 교육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준수사항, 재난 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외에도 i)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 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ii)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5조).

나. 영업의 제한 및 승계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9조제2호). 또한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노래연습장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23조제3항).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 비교

영상물제작업은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이 없이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노래연습장업은 등록을 해야 하고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고용 금지 등의 규제를 받으며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²⁸⁾ 이 밖에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을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8) 채지영·노수연 외 2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래연습장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27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020440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 11., 4면.

〈표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 비교

구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노래연습장업
정의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사무 종류	신고	등록
입지조건	제한 없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등록 제한 ²⁹⁾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내 운영금지 ³⁰⁾
시설기준	별도의 시설기준 없음	상호·간판/영업소의 구획/통로 및 칸막이/안전시설 등/청소년실/조명기구/마이크(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구비서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유·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확인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규제·금지 사항	음악산업법 내 규제 및 금지사항 無	영업소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청소년의 출입 금지/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성매매 등의 행위 알선·제공 금지 접객행위 및 타인에게 알선하는 행위 금지

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4호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Ⅲ. 뮤비방의 문제점과 규제의 난점

1. 뮤비방의 문제점

(1) 형식적인 영업 신고

현재 운영 중인 뮤비방의 대부분은 음악산업법상 까다로운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생활 소음·진동 등의 여러 규제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지자체에 등록 해야만 영업을 가능한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법 제17조) 및 상호 등 표시의무(법 제25조) 외에는 음악산업법상 직접적인 규제가 거의 없고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가능한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실질적인 영업 형태 - ‘뮤비방의 편법·변칙 영업’

문제 되는 것은 녹화 등을 통해 영상을 찍어준다는 것 외에 실제로는 노래연습장과 별반 차이가 없는 뮤비방 영업에 대해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처벌기준 등 별도의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허술한 법망과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많은 뮤비방 영업자들이 뮤비방을 형식적으로는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공중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의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 영상물제작업 본래의 영업 형태와는 무관한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많은 뮤비방이 무등록 상태에서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불법적이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작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카메라나 녹음·녹화 기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뮤비방들도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영업소에서는 음악산업법은 물론이고 「식품위생법」에서도 금지되는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 등의 불법·탈법적인 행위까지 일삼으며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³¹⁾ 이에 기존의 노래연습장업 영업주들이 규제의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

는 것³²⁾은 물론 소규모 영상제작업을 건전한 산업으로 새롭게 육성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들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는 동종 업계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탈법적인 영업으로 인해 건전하게 영업 중인 일반 영업주들은 물론 전체 ‘뮤비방 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³³⁾

2. 뮤비방 규제의 난점

(1) 규제의 사각지대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뮤비방들은 노래연습장업과는 달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³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³⁵⁾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행위 및 시설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 31) 변종 노래연습장인 ‘뮤비방’에 대한 문제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입법 등의 문제 해결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뮤비방’의 편법·변종 영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뉴스 기사로는 류제원, “학교 앞 변종 노래방 눈속임 영업”, 중부매일, 2013년 6월 11일자,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878>>; 연합뉴스, “학교정화구역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르고… 변종 ‘뮤비방’ 성행”, SBS 뉴스, 2016년 5월 18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055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김승희, “[밀착카메라] 노래 뮤비방?… 학교 주변 ‘꼼수영업’ 유해시설”, jtbc 뉴스, 2019년 10월 7일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90874>; 연합뉴스, “광주 학교 지적에 ‘뮤비방’ 성업 중… 단속은 전무”, 한국경제, 2019년 10월 15일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155762Y>> 등이 대표적이다.
- 32) 음악산업법에서는 노래연습장업과 영상물제작업을 다른 업종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업 업주들이 ‘뮤비방’으로 이름만 바꾸어도 영업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많은 노래연습장업 업주들은 뮤비방이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의 흠결로 인해 행정당국이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 및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 33) 조재연·이희권, “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문화일보, 2018년 6월 20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2001071127328001>>,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3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9조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대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5)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 설정한 지역을

않는다.³⁶⁾ 따라서 뮤비방이 실질적으로는 영상물제작업 본연의 영업이 아닌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심지어는 학교 바로 앞에서까지 버젓이 영업을 영위하면서 학생 및 아동·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정신 건강 등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처벌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등 현행법상 뮤비방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뮤비방의 불법·변칙 영업을 실질적으로 규제 및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뮤비방의 구조 및 시설은 노래연습장의 그것과 거의 동일·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뮤비방은 노래연습장과 달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뮤비방의 소방시설이 매우 열악하더라도 행정당국이 마땅히 이를 점검·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으로 지난 2018년 2월 인천의 한 뮤비방에서는 온풍기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해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³⁷⁾ 이와 같이 뮤비방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에 더해 비상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이 강제되지 않는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뮤비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행정청 및 소방 당국의 지도 및 계도 활동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노래연습장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뮤비방은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탓에 오히려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

의미한다.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36)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5호에서는 노래연습장의 신규 등록 시 지자체 담당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해당 노래연습장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음반·영상물제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7) 김정화, “대구 수성소방, 신종 다중이용업소 ‘뮤비방’ 소방안전점검”, 뉴시스, 2020년 5월 13일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3_0001023671&cID=10810&pID=10800>, (최종 방문: 2021년 4월 28일).

및 영업의 제한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이른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일부 뮤비방 관련 창업 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뮤비방을 창업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면 기존의 노래연습장업과 달리 소방완비증명·교육환경보호구역·「학원법」·「건축법」 등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선전 및 홍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⁸⁾

(2) 행정절차상의 난제 - 영상물제작업 신고 신청 시 행정청의 수리 거부 불가

영상물제작업은 단순히 신고만을 요하는 영업으로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자가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신청 시에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는 제작 시설 및 장비 명세서에 노래 반주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담당자로서는 일단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청의 주관적인 예단하에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³⁹⁾

문체부는 뮤비존이라는 업체가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에 소규모 영상제작이 가능한 기기를 추가한 시설을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영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기기·시설을 실제 이용해보는 등의 실사 및 검토 끝에 노래연습장 형태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상물 제작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였더라도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⁴⁰⁾을 한 바 있으며, 법원도 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영업소의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에 노래 반주 장치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38) 안성민, “‘일반형은 불가, 오락실은 가능?’...노래방 ‘이중잣대’”, 청년일보, 2020년 9월 21일자,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48103>>; 조재연·이희권, “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문화일보, 2018년 6월 20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2001071127328001>>,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39)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노1216 판결

40) 문화체육관광부, “노래방시설을 이용한 UCC 등 소규모 영상제작 환경 조성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가능) 요청에 대한 회신”, 국민신문고(1AA-1305-057111), 2013. 6. 4.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⁴¹⁾라고 관련 법리를 실시한 후 “영상물제작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데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필요한 첨부서류 등에 흠결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한도 내에서만 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한도를 넘어서 신고인의 영업 의도를 추단하는 등 법령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다른 요소까지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고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필요한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제출되어 있다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⁴²⁾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영상물제작업의 신고 단계에서 비록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에 노래반주기기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⁴³⁾으로서 이와 같은 법원의 논리는 심지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를 면피할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폐업신고를 하고 영상기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여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4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42)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누9429 판결

43)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자료(주 17), 28면.

IV. 해석론의 한계

1. 소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1) 무등록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악산업법의 소관 중앙부처인 문체부는 명목·형식상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영업소가 무등록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영업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등록 여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i) 영업자의 실제 영업 행태가 어떠한 태양을 보이고 있는지, ii)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고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다면 노래연습장업으로 보아야 하며,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영상물제작업으로 운영되는 영업소가 상기 기준에 의해 노래연습장 영업의 실질을 갖고 있다면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무등록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⁴⁴⁾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형식상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연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만약 이에 해당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장은 동 조문의 적용을 통해 해당 영업소를 폐쇄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변칙·꼼수 노래연습장 영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가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행정처분은 영상물제작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 적용하거나 확대

44) 문화체육관광부, 노래연습장업 변칙영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영상콘텐츠산업과-841, 2012. 3. 8., 1-2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⁴⁵⁾라고 실시한 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때”라 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신고 이후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므로 이미 적법하게 신고한 영상물제작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등 신고한 영업과 다른 영업을 한 경우는 영상물제작업의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 후의 다른 영업을 영위한 행위와 관련되는 것⁴⁶⁾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⁴⁷⁾

다만, “처음부터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때”에 해당할 여지⁴⁸⁾가 있으므로 결국 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⁴⁹⁾

(3) 영상물제작업에 대해 행정청이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한편 법제처는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무등록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청이 해당 영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은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 각각의 영업 종류를 구분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그 영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등록을

45) 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59 해석례

46) 법제처 2010. 05. 14. 회신, 10-0106 해석례

47) 법제처 2012. 06. 14. 회신, 12-2207 해석례

48)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자가 최초 신청 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망 등의 행위를 통해 신고를 한 경우, 처음부터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명백하게 다른 목적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변칙 신고영업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대중문화산업과-1068, 2016. 3. 7., 2면.

49) 법제처 2012. 07. 05. 회신, 12-0352 해석례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에 대해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상물제작업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폐쇄 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⁵⁰⁾

2. 관련 판례 검토

노래연습장업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⁵¹⁾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되었던 1990년대 중반 오늘날의 뮤비방 사안과 유사하게 자유업인 녹음방 영업자가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안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i)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성격은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고,⁵²⁾ ii) 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⁵³⁾이므로 사안의 재항고인이 영상반주 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금 10,000원씩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재항고인이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이하 “CD”)나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사업의 종류를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였으며⁵⁴⁾,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⁵⁵⁾

50) 법제처 2019. 09. 26. 회신, 19-0275 해석례

51) 동법은 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2호에 의해 제정되었다.

52)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604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등

5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73 판결

54) 대법원 1996. 4. 19. 자 96마229 결정

5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 등

뮤비방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i) 영업주가 상호 및 간판을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노래연습장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기재 및 표시하거나, ii) 영상물제작기가 노래반주 기능에 있어서는 그 용법 등이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의 노래반주 기기와 동일하고, iii) 실제 손님 대다수가 영상물 제작 없이 노래 반주 기능만을 사용하여 해당 영업소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며, iv) 영업주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등의 영상물 제작에 관한 안내는 전혀 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들이 인정되면 영업주가 해당 뮤비방 영업소를 형식상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해당 영업소를 무등록노래연습장업으로 규율(법 제34조제3항제1호)한 사례가 있다.⁵⁶⁾

또한 법원은 손님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주가 비록 손님의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 및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영업에 부수하여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영상물제작업이 아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⁵⁷⁾ 특히 법원은 영업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 및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i) 영업자의 영업 형태가 어느 업종의 영업 행위 태양을 띄고 있는지, ii)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 행위는 영상물제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⁵⁸⁾

한편 법원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신고 수리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침익적 처분의 엄격 해석·적용의

56) 청주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고단2054 판결

57)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정22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노1216 판결

58) 수원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4525 판결

원칙’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 당시 명백하지 않은 신고인의 영업 의도 등을 추단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고, 행정청이 달리 영상물제작업의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근거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⁵⁹⁾

3. 한계

문체부 및 법제처 등 관련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은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응 타당하고 합리적이지만 일선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들이 거의 동일·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뮤비방과 노래연습장업을 영업자 내심의 주관적 의도 까지 파악하여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뮤비방은 최소한의 영작제작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인의 영업 의도를 예단하고 해당 영업소의 실질적인 영업 행태 및 영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포착하여 두 영업을 명확하게 구분 하는 것은 행정력의 부족⁶⁰⁾ 등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뮤비방은 현재 경찰 단속이 가능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풍속영업소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음악산업법의 흠결·한계로 인해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영업자들과 법적 갈등·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⁶¹⁾ 설사 일선 업무 담당자가 뮤비방을 일일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관련 법제의 개선 없이는 여전히 사후약방문식의 사후적인 조치만 가능하고 사전 예방적인 규제 및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잔존한다.

59)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누9429 판결

60) 일선 실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 행정행위 및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인력 등 행정력이 부족하여 담당자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재환, “광주, 학교 인근서 변종 노래방 ‘뮤비방’ 난무”, 남도일보, 2019년 11월 21일자,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352>>,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61) 전희진, “대전도 ‘뮤비방’ 상륙… 술·도우미 제공 변태영업”, 대전일보, 2016년 4월 4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09385>; 윤설아, “인천시·문광부, 변종노래방 단속 떠넘기기 급급”, 경인일보, 2017년 3월 6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303010000944>>, (최종방문: 2021년 4월 28일).

V. 뮤비방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결국 위에서 살펴 본 규제의 난점과 해석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뮤비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 법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뮤비방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1.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는 방안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2020440호)로 아래와 같이 기존 노래연습장업 정의 규정상의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에 영상물 제작 기능을 갖춘 경우까지 포함하게 함으로써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이 아닌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다.⁶²⁾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 -----반주장치(영상물 제작 기능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

이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종 업종인 뮤비방에 대해서 노래연습장업과 완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뮤비방의 등록절차와 시설기준 및 금지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에 입법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⁶³⁾

62)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20440호, 2019. 5. 15., 1-2면.

개정안과 같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기능을 갖춘 노래 반주 장치를 사용하는 시설을 일률적으로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은 i)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ii) 영상물 제작 기능이 부가된 노래 반주 장치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장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 행태에 따라서 영업의 종류가 달리 판단된다”라는 법원의 입장에도 반하고, iii)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녹음·영상 스튜디오 등 본래적 의미의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자들까지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된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적했듯이 뮤비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구체적인 검토 및 논의 없이 일률적으로 뮤비방을 규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모든 뮤비방을 일률적으로 노래연습장업에 포섭하는 방안 대신 포괄적 대리를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아닌 저작권신탁업으로 포함⁶⁴⁾하도록 하고 있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과 같이 “영업의 실질적인 행태 및 내용이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3. ----- ----- ----- -----말하며, 영업의 실질적인 행태 및 내용이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3)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020440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 11., 5-6면.

64) 「저작권법」에서 포괄적 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함하는 이유는 포괄적 대리가 신탁관리 그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탁과 대리는 엄연히 별개의 제도이지만 포괄적 대리의 경우는 신탁관리와 마찬가지로 권리자의 권익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허가제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7년, 485면.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 ①- ----- ----- ----- -----등록----- -----등록----- -----

이 경우에도 행정청이 뮤비방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제작업에 대해 노래연습장업에 준한 등록절차와 시설기준 및 금지사항 등을 별도로 마련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뮤비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녹음·영상 스튜디오 등 본래적 의미의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게는 자칫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영상물제작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뮤비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본래적 의미의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은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하고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뮤비방은 불법 영업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음악산업법에서는 음악영상물 제작자에게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7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서도 영상물제작업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명시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법 제50조제1항)하면서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마다 제작한 자의 상호,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등을 표시(법 제65조제1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뮤비방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표시 없이 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공

급·판매·대여(이하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비디오법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⁶⁵⁾을 제작·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법 제53조제1항제1호)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95조).

또한 뮤비방의 실질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음악산업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도 영상물제작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개정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 - ‘제3의 길’

다음으로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뮤비방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뮤비방 영업에 대해 노래연습장업에 준한 별도의 등록절차와 시설 기준 및 금지사항 등을 음악산업법 내에 마련하는 것은 뮤비방의 변종·탈법 영업을 규제 및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산업법에서 뮤비방 영업을 과연 어떠한 명칭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뮤비방 영업이 기존의 노래연습장업 및 영상물제작업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탈법·불법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뮤비방으로 인해 문제 되고 있는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뮤비방 영업을 “영상 녹화 및 편집 등 영상 제작기기와 노래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동시에

65) 음악산업법 제17조에서는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비디오법 제50조 내지 제56조·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제97조·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영화비디오법상의 ‘비디오물’을 음악산업법상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갖춘 영업”으로 정의함으로써 각각 노래 반주 장치만을 사용하는 노래연습장업과 영상물 제작기기만을 사용하는 영상물제작업과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음악산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각 영업자의 주요 시설·기구와 관련하여 뮤비방 영업의 경우에는 ‘노래 반주 장치과 영상물 제작기기’로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에도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같이 뮤비방의 실질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음악산업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뮤비방 영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개정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방안으로 법 개정 추진 시 현재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뮤비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뮤비방 영업을 기존의 노래연습장업 및 영상물제작업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현행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녹음·영상 스튜디오 등 본래적 의미의 영상물제작업 범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8. ----- ----- 유통 및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제작하거나----- -----.

같은 취지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우상호 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0440호)로 영상물제작업 정의 규정상의 ‘기획제작’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상물제작업의 요건을 강화하여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이 아닌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던 바 있다.⁶⁶⁾ 위와 같이 기존 영상물제작업 정의 규정상의 ‘기획제작’에 “유통 및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본래적 의미의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부분의 뮤비방들이 더 이상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⁶⁷⁾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란 공중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 ----- -----.

제19대 국회에서도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에 “공중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영상물제작업을 본래적 의미의 영상물제작업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제196722호)한 바 있다.⁶⁸⁾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두 개정안에서는 영상물제작업의 정의를 “유통 및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제작”이나 “공중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영상물제작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뮤비방이 영상물제작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66)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20440호, 2019. 5. 15., 1-2면.
 67)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020440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 11., 3면.
 68) 정부 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6722호, 2013. 9. 6., 5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은 물론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는 개념(「저작권법」 제2조제32호)으로서 개정안은 ‘공중’이라는 개념을 통해 음악산업법상의 영상물제작업을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녹음·영상 스튜디오 등 본래적 의미의 영상물제작업으로 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의 의도는 ‘음반등’을 테이프, CD 등 유체물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오늘날 음반·영상물 이용 및 유통 행태의 급격한 변화 환경에서는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뮤비방 고객이 뮤비방에서 제작한 음반·영상물을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행위 내지 음반등을 “유통 및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개정안을 따르더라도 뮤비방은 여전히 영상물제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만으로는 뮤비방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만 앞에서 살펴본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과 함께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뮤비방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최근 기존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래 반주 장치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녹음·녹화 기능을 부가적으로 더한 장치 및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자 ‘뮤직비디오 제작방’의 출입말을 의미하는 이른바 ‘뮤비방’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뮤비방은 현행 음악산업법상의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에 모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뮤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본인의 의도에 따라 영업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뮤비방 영업자들은 고객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녹화해서 찍어 준다는 것 외에는 실제 노래연습장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뮤비방을 형식적으로는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하는 꼼수·

탈법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무비방의 편법·불법 영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며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관계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 정책 및 규제 공백으로 인해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비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이 허술한 법망과 규제 공백 상태를 노린 영업자들로 인해 오히려 무비방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을 중심으로 무비방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무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는 방안은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판례의 입장에도 반하며 기존의 본래적 의미의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업의 실질이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실제 무비방을 규제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담, 행정력 부족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남아 있지만 문제 되는 무비방만을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무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하고 영상물제작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무비방에 대해서만은 적절한 규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녹음·영상 스튜디오 등 본래적 의미의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다른 영업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이 무비방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영상물제작업에 대해 노래연습장업에 준한 등록절차와 시설기준 및 금지사항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서도 영상물제작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후속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무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하고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무비방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음악산업법 및 영화비디오법상의 등급분류, 표시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여전히 무비방이 불법 영업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뮤비방에 대해 노래연습장업에 준한 별도의 등록절차와 시설기준 및 금지사항 등을 마련하는 등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과 현행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를 각기 따로 입법하는 것은 뮤비방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따르므로 함께 입법하는 것이 뮤비방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및 제언들이 뮤비방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뮤비방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논문의 마지막을 갈음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문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년.
- 박민·황승흡·김정환(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음악산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7년.
-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법, 프레젠티, 2015년.
- 문지현, “한국노래방의 성장을 둘러싼 사회문화사 :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1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6년.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콘텐츠 산업백서, 2019년.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19년.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 진흥업무 매뉴얼, 2017년.
- 채지영·노수연 외 2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래연습장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020440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 11.
- 문화체육관광부, “노래방시설을 이용한 UCC 등 소규모 영상제작 환경 조성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신고 가능) 요청에 대한 회신”, 국민신문고(1AA-1305-057111), 2013. 6. 4.
- 문화체육관광부, 노래연습장업 변칙영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영상콘텐츠산업과-841, 2012. 3. 8.
- 문화체육관광부, 노래연습장업 변칙영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대중문화산업과-752, 2013. 7. 8.
- 문화체육관광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변칙 신고영업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대중문화산업과-1068, 2016. 3. 7.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문체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 영업 단속 강화-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 시행-”, 대중문화산업과, 2014. 4. 8.
-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20440호, 2019. 5. 15.
- 정부 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6722호, 2013. 9. 6.
- 김수진, ““뮤직비디오 만드세요” 노래뮤비방, 영상제작실로 역할 ‘톡톡’”, 글로벌이코노믹, 2015년 11월 10일자,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11101547540169945_1/article.html?md=20151110161020_R>.

- 김승희, “[밀착카메라] 노래 뮤비방?…학교 주변 ‘폼수영업’ 유해시설”, jtbc 뉴스, 2019년 10월 7일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90874>.
- 김정화, “대구 수성소방, 신종 다중이용업소 ‘뮤비방’ 소방안전점검”, 뉴시스, 2020년 5월 13일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3_0001023671&cID=10810&pID=10800>.
- 김재환, “광주, 학교 인근서 변종 노래방 ‘뮤비방’ 난무”, 남도일보, 2019년 11월 21일자,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352>>.
- 김주엽, “[법의 사각지대 ‘뮤직비디오방’·하·끝·단속·규제 엇갈리는 행정당국]”, 경인일보, 2017년 2월 28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227010009712>>.
- 김주엽, “문광부 ‘뮤비방’ 단속규정 개정 착수”, 경인일보, 2017년 3월 27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326010009428>>.
- 류제원, “‘학교 앞 변종 노래방’ 눈속임 영업”, 중부매일, 2013년 6월 11일자,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878>>.
- 백정훈, “광주광역시, 변종 노래방 ‘뮤비방’ 성행”, 포커스 투데이, 2019년 3월 22일자,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04>>.
- 신익규, “사각지대 놓인 ‘변질 뮤비방’”, 금강일보, 2019년 10월 10일자,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968>>.
- 안성민, ““일반형은 불가, 오락실은 가능?”…노래방 ‘이중잣대’”, 청년일보, 2020년 9월 21일자,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48103>>.
- 연합뉴스, “광주 학교 지척에 ‘뮤비방’ 성업 중…단속은 전무”, 한국경제, 2019년 10월 15일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155762Y>>.
- 연합뉴스, “학교정화구역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르고…변종 ‘뮤비방’ 성행”, SBS 뉴스, 2016년 5월 18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055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윤설아, “인천시·문광부, 변종노래방 단속 떠넘기기 급급”, 경인일보, 2017년 3월 6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303010000944>>.
- 전희진, “대전도 ‘뮤비방’ 상륙… 술·도우미 제공 변태영업”, 대전일보, 2016년 4월 4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09385>.
- 조재연·이희권, “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문화일보, 2018년 6월 20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2001071127328001>>.
- 황신섭, “‘뮤비방’이라 쓰고 ‘노래방’으로 읽기?”, 인천일보, 2017년 3월 26일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28>>.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604 판결
대법원 1996. 4. 19. 자 96마229 결정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7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누94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452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정22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노121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고단2054 판결

법제처 2010. 05. 14. 회신, 10-0106 해석례
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59 해석례
법제처 2012. 06. 14. 회신, 12-2207 해석례
법제처 2012. 07. 05. 회신, 12-0352 해석례
법제처 2019. 09. 26. 회신, 19-0275 해석례

논문 투고일: 2021. 04. 30.
심사 완료일: 2021. 06. 08.
게재 확정일: 2021. 06. 22.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Rational Regulation of 'Music Video Room'

You, Hyun-woo*

'Music Video Room(M/V room)', which have recently been prevalent nationwide, are new businesses that does not have separate legal grounds and regulations in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the M/V room is applied to both Record and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and Singing Practice Place Business. However, many operators notify their M/V room as Record and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and actually operate it as a de facto Singing Practice Place Business. Although similar Singing Practice Place Business of M/V room are causing a lot of social problems,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not come up with a proper regulatory measures.

Thus, I proposed a practical and rational way to regulate M/V room that are virtually in the blind spots of regulation due to legal flaws, difficulties in vario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limitations of interpretation theory in this paper. The most desirable 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n M/V room is to define M/V room as a separate business within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while at the same time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Record and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Key Words: Karaoke, Singing Practice Place, Singing Practice Place Business, Music Video Room(M/V room), Food Sanitation Act, Record and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pyright Office, Copyright Policy Division, professional career officer

